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공고 제2019-46호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른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장등록 취소
2.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역

연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1	주식회사 성지엘리베이터	임*성	봉수대로1531번길 17 (금곡동 236-4번지)	공장폐업 (제조시설 멸실)	공장 등록취소
2	윤성화학	박*영	불로동 579번지	공장폐업 (건축물 멸실)	"
3	(주)기영	박*석	길무로 236 (오류동 1518번지)	공장폐업 (타업체 사용)	"
4	(주)원광엔지니어링	박*숙	두루물로8번길 15 (오류동 434-108번지)	공장폐업 (타업체 사용)	"
5	(주)해강스틸	이*아	봉수대로 1274 (왕길동 107-14번지)	공장폐업 (제조시설 멸실)	"
6	태진화학	오*석	원당대로507번길 5 (왕길동 190번지)	공장폐업 (타업체 사용)	"
7	대광기계공업	김*길	원당동 123번지	공장폐업 (건축물 멸실)	"

3.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4. 청문일시: 2019. 8. 9.(금) 13:00~18:00(5시간)
5. 청문장소: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6. 청문주재자: 검단출장소 총무팀장 이탁규
7. 공고기간: 2019. 7. 19. ~ 2019. 8. 9.(21일간)
8. 문 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담당자 우민수, ☎032-560-3238)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032-560-3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